

1. 개정 이유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 규정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전의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 중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의2(우선 지원 수련전문과목 지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수련전문과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우선 지원 수련전문과목 지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 과목”이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수련전문과목을 추가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조의2(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제1조의3(수련시간) ① 법 제7조 제3항----- ----- ----- ----- -----. ② (현행과 같음)